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15
----------	------

발의연월일 : 2020. 11. 17.

발 의 자 : 김형동 · 김은혜 · 송언석
추경호 · 서일준 · 한무경
김용관 · 정진석 · 박대수
이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이에 노출될 경우 국민보건상 위협이 되거나 환경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큼.

그런데 현재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노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 등에 대한 감염 위해(危害)를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료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하 “의료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의료폐기물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수도권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2. 영남권역: 대구광역시·경상북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3. 강원·충청·호남·제주권역: 강원도·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의료폐기물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권역에서 의료폐기물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등을 처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료폐기물등의 양이 해당 권역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권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1개만 있는 경우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 및 제11호”를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의료폐기물등을 처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⑤ (생 략) <u><신 설></u></p>	<p>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의료폐기물 및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하 “의료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배 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 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의료폐기물등을 처리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도권역: 서울특별시·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u> <u>2. 영남권역: 대구광역시·경상 북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 시 및 경상남도 지역</u> <u>3. 강원·충청·호남·제주권 역: 강원도·대전광역시·충 청북도·충청남도·세종특별 자치시·광주광역시·전라북 도·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 치도 지역</u> <p><u>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의료폐기물등</u></p>
<p><u><신 설></u></p>	

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권역에서 의료폐기물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등을 처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의료폐기물등의 양이 해당 권역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권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1개만 있는 경우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 11. (생략)

<신설>

13. ~ 27. (생략)

제65조(벌칙) -----

-----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의료폐기물등을 처리한 자

13. ~ 27. (현행과 같음)